發明 奬勵事業 推進要領

제 정	1983.2.9	특허청고시	제83-12호
개 정	1983.6.10	특허청고시	제83-13호
개 정	1984.1.31	특허청고시	제84-15호
개 정	1985.4.23	특허청고시	제85—2호
전문개정	1988.8.26	특허청고시	제88—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발명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발명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로서 발명·고안을 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생발명반"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학생발명활동반으로서 특허청에 신고된 발명반을 말한다.
4. "외국출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에 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5. "국제전시회"라 함은 외국에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발명품 및 신기술전시회로서 한국발명특허협회가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출품업무를 주관한 전시회를 말한다.

제 3 조 (발명장려사업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장려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
2.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개최
3. 우수발명시작품제작비 지원
4. 외국출원비용 지원
5. 국제전시회출품 지원
6. 학생발명반활성화 지원
7.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 4 조 (한국발명특허협회규정)

① 제3조의 발명장려사업중 한국발명특허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그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2 장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

제 5 조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용)

① 발명품의 상설전시 등 사업을 위하여 협회에 발명장려관을 설치한다.

② 특허청장은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 (발명장려관의 사업)

발명장려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명품의 상설전시사업
2. 발명의 기업화를 위한 상담 및 유통알선사업
3. 기타 발명의 연구 및 장려에 관한 사업

제 3 장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개최

제 7 조 (전시회 개최)

특허청장은 우수발명품의 전시를 통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제 8 조 (회장의 관리사항)

전시회에의 출품, 출품심사, 전시장배정, 전시품의 반출입 및 전시장관리 등은 회장책임하에 관리한다.

제 9 조 (출품자격)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을 등록한자 및 그 승계인
2. 학생으로서 발명·고안을 한 자.
3. 발명·고안을 한 자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출품물)

출품물은 실물을 원칙으로 하며, 모형, 견본등을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출품규격)

전시의 출품물의 규격은 가로 150cm, 세로 100cm, 높이 150cm, 무게 70kg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동 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출품절차)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출품심사등)

① 회장은 출품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심사위원회가 출품물을 심사할 경우에는 출품발명의 기술성, 기업성, 국민 경제상의 기여도, 이미 다른 전시회의 출품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학생발명품의 경우에는 창의성, 연구성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제14조 (시상)

① 회장은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발명품에 대한 시상을 특허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우수발명품에 대하여는 상장과 상금, 트로피 또는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 (전시장배정)

① 회장은 출품물의 전시위치 면적등 전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스를 배정하며, 출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회장은 전시장의 전체적인 조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정된 부스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출품자는 배정된 부스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16조 (기본시설)

① 전시장의 기본시설 이외의 부수장치물 공사는 출품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② 전시장내의 전화설치료, 전화사용료, 전기사용료, 급배수설치비 등의 경비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전시품 반·출입)

출품자의 전시품 반입과 전시후 철거 및 반출은 회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우수발명시작품제작비 지원

제18조 (시작품제작비 지원)

특허청장은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한 발명·고안으로서 시작품제작비 지원 신청이 속하는 당해년도의 말까지 그 권리가 존속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 (신청기한)

시작품제작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매년 1월말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선정기준 등)

① 시작품제작비 지원 대상의 발명·고안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발명의 기술적 우수성
2. 발명의 기업화 가능성
3. 발명의 국가산업발전 기여도
4. 총제작비중 자기부담능력 등

② 시작품제작비 지원 대상선정에 있어 대상발명·고안이 경합될 경우에는 영세발명자, 학생발명자, 개인 발명자, 중소기업자의 발명·고안 순으로 한다.

제22조 (선정절차)

시작품제작비지원 대상은 제48조에서 정한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23조 (보조금 교부신청)

① 회장은 최종 선정된 발명의 시작품제작비에 소요되는 비용중 정부보조 요구액과 자기부담으로 구분 계상하여 특허청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시작품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시작품 선정과 제작사업에 따른 기술검토비 및 인건비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 교부기준)

① 시작품제작비 보조금 교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발명자 및 학생발명자는 제작비용의 전액범위내
2. 개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80% 범위내
3.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50% 범위내

② 제1항의 제작비용은 재무부재정회계예규에 의해 지정된 원가조사기관의 원가조사금액을 참고하여 시작품 제작업체(기관)와 체결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조금 교부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작품제작의 난이도에 따라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금 교부승인)

① 특허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이를 회장에게 통보한다.

② 보조금교부는 당해사업의 진도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당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미리 몇회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일시에 전액을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 (시작품 제작의뢰)

① 회장은 시작품제작 업체(기관)를 선정하고 제작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시작품제작 계약체결전에 시작품제작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시작품 제작비 지급 및 시작품 인도)

① 회장은 시작품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검수하고 제작비용을 정산하여 당해 시작품제작업체(기관)에 지급한다.

② 회장은 제작계약을 체결할때와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작비용의 일부를 제작공정에 따라 시작품제작 완료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시작품제작업체(기관)로부터 검수한 시작품(금형포함)을 즉시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제28조 (시작품전시등 기업화 알선)

회장은 기업화를 위하여 시작품의 전시,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하여, 합작투자 및 금융지원등의 알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작품제작협조 및 보고)

회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당해 시작품제작에 관한 협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시작품제작의 정지 및 취소)

회장은 시작품제작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작품의 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집행된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품제작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때
2. 시작품제작비중 자기부담금액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때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 및 사전협의를 거부하거나 보고를 태만히 한때
4. 시작품제작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발명고안을 회장과의 사전협의없이 당해 특허권을 양도한 때
5. 기타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때

제 5 장 외국출원비용 지원

제31조 (외국출원비용 지원)

특허청장은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출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신청인의 자격)

외국출원비용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

제33조 (신청절차)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거래은행구좌번호가 기입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특허청장에게 보조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신청기간 및 대상)

보조금교부의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기간은 매년 10.1부터 10.31일 까지로 한다.

2. 신청대상은 전년도 10.1부터 당해년도 9.30사이에 외국출원비용 송금사실이 있는 출원으로 한다.

제35조 (교부기준)

① 보조금은 출원건별로 40만원을 교부하되, 외국출원비용이 80만원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의 50%를 교부한다.

②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보조건수는 5건범위내로 한다. 다만,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보조건수의 계산은 지정 국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33조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결과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부한다.

1. 개인발명자의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자에게만 안분조정한다.

2. 개인발명자 및 중소기업자의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자에게 우선하여 교부하고 잔액을 중소기업자에게 안분조정한다.

제36조 (보조금교부)

특허청장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요청이 있을때에는 1월 이내에 교부결정을 하여 신청인의 거래은행구좌에 입금한다.

제37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특허청장에게 익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출원인의 명의변경
2.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등록사정
3. 기타 특허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 6 장 국제전시회출품 등 지원

제38조 (국제전시회 출품등 지원)

특허청장은 우수발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출품자에 대한 출품보조금 및 수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출품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대상)

① 출품 보조금은 협회가 출품업무를 주관한 국제전시회의 출품으로서 1인당 년간 3건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제1항의 출품중 입상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당해 국제전시회에서 동일인이 2개이상의 출품에 수상한 경우에는 그중 격이 높은 1개만에 대하여 지급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 고안품으로 다시 입상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출품심사위원회 설치)

① 우수한 발명·고안을 선별출품하기 위하여 협회에 출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출품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정하는 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발명품의 기술적 우수성, 다른 국제전시회에의 출품여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③ 출품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지급기준)

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보조금은 건당 출품비의 80%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상은 200만원 이내
2. 금상(특별상, 준대상포함)은 150만원 이내
3. 은상(금은상 포함)은 100 만원 이내
4. 동상은 50만원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출품보조금 및 보상금 총액이 당해년도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분조정한다.

제 7 장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

제42조 (학생발명반활성화지원)

특허청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학생발명자 및 우수발명반 운영학교에 장학금 및 발명반 활성화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지급대상자선정)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학생발명품전시회 수상자 또는 해당 시·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중에서 특허청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지원금 지급대상은 학생발명반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해당 시·도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4조 (지급기준)

장학금 및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다.

제45조 (지급시기)

장학금 및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 (지원금의 사용제한)

지원금은 학생발명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사용한다.

제 8 장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47조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 설치)

발명의 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에 발명품기업화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8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발명의 기업화 가능성 검토
2. 기업화 지원기관(단체)에의 추천 및 발명수요업체와의 연계
3. 시작품 제작비지원을 위한 심사 등

제49조 (조직과 운용)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983.2.9 특허청고시 제83—12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특허청고시 제82—9호, 제82—10호, 제82—1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6.10 특허청고시 제83—13호〉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출원료등 요금납부면제 요령(특허청고시 제81—8호)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 칙 〈1984.1.31 특허청고시 제84—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4.23 특허청고시 제85—2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특허청고시 제82—9호, 제82—10호, 제82—1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8.8.26 특허청고시 제88—3호〉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고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 특허청고시 제86—1호(86.4.1)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중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시회의 출품보조금은 89.1.1부터 적용한다.

〈끝〉

新 刊 案 內

新 特 許 法

저자 : 辨理士 南 啓 榮 외 3人
규격 : 국판 512면
가격 : 8,300원

工 業 所 有 權 法 要 解

저자 : 辨理士 金學濟·金延洙 공편
규격 : 국판 734면
가격 : 9,000원

改正工業所有權法 해설

저자 : 特許廳 金 憓 來 저
규격 : 국판 154면
가격 : 3,500원

商 標 法

저자 : 辨理士 李 秀 雄 저
규격 : 국판 552면
가격 : 9,500원

國 際 工 業 所 有 權 法

저자 : 辨理士 金 永 吉 저
규격 : 4·6배판, 1,664면
가격 : 74,000원

改 正 版

商 標 法 解 說

저자 : 金 寬 衡(本會 研修部長)
규격 : 국판 480면
가격 : 9,5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발명장려관내 자료판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568—8263